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나. 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를 “형식 및 제작연월”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를 “형식 및 제작연월”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9.> [시행일 : 2019. 1. 1.] 비고란

제 호					자 동 차 제 작 증				
자 동 차 의 표 시	제 원 관 리 (신 고)번 호		차대번호						
	차 종		원동기 형식						
	차 명(형 식)		연식(모델연도)						
	총 중 량		승차 정원						
	최대 적 재 량		배기량(기통수)						
	색 상		원동기 마력						
	길이 · 너비 · 높이		제동장치에 석면 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사용 안 함		
내압용기 장착검사증 발급번호									
판매 전 결함시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료				
제작연월일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규 격		× (mm)		
최초 양도연월일		년	월	일	공 급 가 액 (부가세 제외)		원		
양 수 인	성 명 (명 칭)				주 민 (법 인)				
	주 소				등 록 번 호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접 신청 <input type="checkbox"/>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작 자 또 는 양 도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양도인	소 재 지								
비고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반품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에 따라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판매 전에 결함을 시 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